

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표법</p> <p>[시행 2024. 8. 7] [법률 제20200호, 2024. 2. 6, 타법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표법</p> <p>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20697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</p>
<p>제57조(출원공고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57조(출원공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</p>	<p>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</p>
<p>제60조(이의신청)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60조(이의신청)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
<p>1.2. (생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0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생략)</p>	<p>제110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
<p>⑧ (생략)</p>	<p>⑧ (현행과 같음)</p>